

신탁계약 해지청구서

신청인	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해지 사유 (해당 항목에 "√" 표시)	[]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[]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[]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[]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·운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[]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>

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
업무 처리절차

